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-825

제출년월일 : 2025. 8.12.
제 출 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안산시 “다함께돌봄센터” 운영사무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 (다함께돌봄센터) 와 「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서,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설치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·운영사무를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□ 위탁사무명

○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·운영

□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(다함께돌봄센터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, 제7조, 제10조
- 2025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

○ 필요성

-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공공/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중심의 아동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돌봄 안전망 확충
- 아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

□ 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

○ 위탁기간: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(※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)

○ 위탁내용: 2025년 설치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업무 전반

- 아동의 안전한 보호
-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-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- 체험활동 및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-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-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그 외 시장이 필요에 의해 위탁하는 아동돌봄 사업 등

※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)

□ 수탁자 선정방식

○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○ 수탁자격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*, 비영리민간단체**

*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'사회적협동조합'은 비영리법인임.

**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

○ 선정방법: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

○ 심의방법: 서류심사 및 제안 설명 후 위원 심의

※ 시설장 내정자를 선정해 신청하고, 시설장 내정자와 대표자는 선정위원회에 참석

○ 심사기준(안) (※ 필요시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)

심사항목	항목별 점수
1.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	45
2.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	20
3. 사업수행기관 공신력	10
4. 사업수행기관 재정능력	15
5. 심사발표 및 종합의견	10

※ 위원별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자로 선정

☐ 위탁시설 개요

○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면적(㎡)	정원(명)	종사자(명)	개 소 예정일	비고
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(선부행복**가치키움터**)	단원구 선부로 35, 상가동 201,202호 (선부동, 선부행복주택)	242.92	25 (예정)	시설장 1 돌봄교사 1 (시간제 2 가능) 돌봄인력 1	2025. 12. 예정	

○ 연간 위탁금 현황(센터 1개소 연간 예상 소요액)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국비	도비	시비	비 고
총 지원액	**277,957**	**133,542**	**62,093**	**82,322**	
설치비	**100,000**	50,000	25,000	25,000	· 균특 50%, 도비 25%, 시비 25% · 198㎡이상 100백만원, 132㎡~198㎡ 75백만원
기자재비	**40,000**	40,000	-	-	· 균특 100% · 198㎡이상 40백만원, 132㎡~198㎡ 30백만원
인 건 비	**75,084**	37,542	18,771	18,771	· 균특 50%, 도비 25%, 시비 25% ※ 센터장 3,245천원(월/개소), 돌봄교사 3,012천원(월/개소)
인건비 추가	18,020	-	5,406	12,614	· 도비 30%, 시비 70% (호봉제)
돌봄인력 지원	18,303		5,491	12,812	· 도비 30%, 시비 70% (호봉제)
운영비(매칭)	12,000	6,000	3,000	3,000	· 균특 50%, 도비 25% 시비 25% (1,000천원/개소/월)
운영비(자체)	1,200	-	-	1,200	· 시비 100% (100천원/개소/월)
행복밥상지원	6,750	-	2,025	4,725	· 도비 30%, 시비 70%
처우개선비	600	-	600	-	· 도비 100%(50천원/개소/월)
특수근무수당	3,600	-	1,080	2,520	· 도비 30% 시비 70% (5년 이상 월 15만원/5년 미만 월 10만원)
돌봄프로그램운영	2,400	-	720	1,680	· 도비 30% 시비 70%

※ 설치비 및 기자재비 예산은 2024년 신규 미설치로 인한 명시이월 예산임

※ 신규 설치 시 설치비, 기자재비는 센터 개소 전 1회 집행

※ 설치비는 필요에 따라 위 설치비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

□ 향후일정

○ 시설 무상사용 협약 체결 : 2025. 9.

○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 개최 : 2025. 9.

○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5. 10. ~ 11.

○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개소 준비 : 2025. 11.

○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: 2025. 12.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예산수반사항【붙임1】

○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【붙임2】

○ 관계법령 발췌서【붙임3】

○ 방침결정문【붙임4】